

○보건사회부 고시 제88-69호 지역의료보험 적용지역

의료보험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료보험적용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년11월10일

보건사회부장관

(가)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전국의 모든 시

(나) 급여개시시기 : 1989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법 제8조 제1항

제8조(보호의 내용) ①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찰
2.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7. 분만

4. 폐지조례(안) : 별첨

서울特別市麻浦區分娉介助費支給條例廢止條例(案)

서울特別市麻浦區分娉介助費支給條例는 이를廢止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1992년 9월17일 都市建設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8월11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第11回議會(臨時會)

第1次委員會('92.9.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都市整備課長 김인환)

가. 제안이유

舊都市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事項을 규정하며, 舊都市計劃委員會 설치와 동시에 기존舊都市整備자문위원회는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기능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및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구성 : 委員長, 副委員長을 包含한 17人 以內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 (專門委員 김현기)

첫째, 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중 가장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제1호의 위임사항 심의는 현재 서울특별시로부터 소규모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입안. 결정권등 권한위임이 각 자치구에 구체적으로 확정, 위임되지 않고 있어 조례제정으로 당장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사료됨.

둘째,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수는 17인으로 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이경우 당연적인 구청장, 부구청장을 제외하면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은 3명정도가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있어 구의원중 일부 의원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는 관련 전문인을 가급적 많이 위촉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이며 본 조례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전병만위원)

구 의원은 몇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답변요지(도시정비과장 김인환)

3인까지 참여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김중열위원 :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서울特別市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제출년월일 : 1992년 . . .

제 출 자 : 서울特別市麻浦區廳長

1. 제정이유

○都市計劃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에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기능(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구성(안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 위 원 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회의원과 公務員 및 都市計劃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자중에서 區廳長이 임명 또는 위촉
-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잔임기간

○회의소집, 의결정족수(안 제5조)

- 회의소집 : 委員長이 필요인정시 소집
- 정 족 수 : 재적과반수출석 개의, 출석 위원과반수찬성 의결

○소위원회(안 제6조)

- 委員會에서 위임한 事項을 심의하기 위해기능별 소위원회를 둠.
-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委員長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 서기(안 제7조)

- 간사 : 都市整備課長
- 서기 : 都市整備係長

3. 근거

○都市計劃法 第75條 내지 第77條

○都市計劃法施行令 第59條 내지 第65條

4. 參考事項

○서울特別市 都市計劃委員會 構成

- 법 상 : 委員長, 副委員長을 포함한 22人以內(委員長 : 副市場)
- 現 行 : 20人으로 構成(내부위원8인, 외부위원12인)

· 개정시 : 시의회 의원추가

○마포구 都市整備諮問委員會 構成

- 조례상 : 委員長을 포함한 13人以內(委員長 : 副區廳長)
- 現 行 : 12人으로 構成(내부위원4인, 외부위원8인)

· 개정시 :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 추가 17人以內

5. 시행일자 : 서울特別市 麻浦區 都市計劃委員會條例 公布日로부터 施行

6. 關聯條文 : 별첨

서울特別市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제1조(목적) 이 條例는 都市計劃法 第75條 내지 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서울特別市 麻浦區 都市計劃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區廳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副區廳長이 된다.

③委員은 區議會 議員과 公務員 및 都市計劃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있는자중에

서 區廳長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委員長등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職務를 통할하며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委員長 및 副委員長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委員會의 회의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소위원회) ①委員會에서 위임한 事項을 심의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으로 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마포구 공무원이

아닌 都市計劃委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委員會는 非公開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關係法令에 의하여 특정한 參與 또는 公開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法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麻浦區象徴物選定(案)審査報告書

1992년 9월18일
總務財務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8월29일
麻浦區廳長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第11回臨時會
第1次委員會('92.9.18)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공보실장 전재섭)

가. 제안이유

본격적인 地方自治時代를 맞아 상징을 통하여 구민들의 共同體意識과 愛郷心을 鼓吹하고 一體感을 조성하여, 麻浦區의 發展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상징물을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징물선정
 - 꽃 (區花) : 목련꽃
 - 나무(區木) : 단풍나무
 - 새 (區鳥) : 청둥오리
 - 색깔(區色) : 초록색